

[별지 제10호 서식]

확 인 서

1. 결격사유*

* 「국가교육위원회법」 제7조(결격사유) 준용

※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√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

<p>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</p> <p>1. 피성년후견인 /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~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(성폭력범죄, 스토킹범죄 등)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(성폭력범죄,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등)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	<p>해당하지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(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) 등록 여부</p>	<p>해당하지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■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 당원</p>	<p>해당하지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
2. 겸직금지*

* 「국가교육위원회법」 제9조(겸직금지) 준용

※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√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

<p>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여부</p>	<p>해당하지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종사 여부</p>	<p>해당하지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
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. . .

성명 :

(서명)

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